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서울대 법대 졸, 동대학원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논문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매체규제
제도의 개선방향」 외 다수

I. 들어가는 말

요즘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¹⁾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신문이란 정보의 제1차적 뉴스제공자가 웹상에서 하루 1회 이상의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²⁾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하 '신문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와 공존하고 있던 온라인매체 중에서 특히 이러한 '인터넷신문'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인터넷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초창기부터 오프라인상의 범규범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일단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각종 언론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는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직무,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되

1)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최영, "인터넷매체의 현황과 문제점", 「관훈저널」 제45권 제1호(통권 제90호), 관훈클럽, 2004.4, 94-100면 참조.
2) 이러한 인터넷신문의 특성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배포될 수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었던 구축비용이 없어짐에 따라 신생기업들이 기사의 질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기사가 디지털화되어 저장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공할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높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문주영, "인터넷신문", 「정보통신산업동향」 200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8. 25-26면 참조.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내지 규제정책의 적용을 받게 돼

는 것으로 해석된다.³⁾

둘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각종 언론 '규제'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0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신문법상의 등록절차를 마친 인터넷신문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위와 같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 한계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

2005. 1. 27. 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인

터넷신문을 법제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 언론으로서의 지위

우선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의 개념을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언론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통적인 언론기관인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도 내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방송, 정기간행물 등에 부여되었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등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인정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지원정책 내지 규제정책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2.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인터넷신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전부터 인터넷신문 내지 인터넷언론의 법제화가 주로 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세계상의 혜택이나 언론교육기관의 교육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장하용,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제23권 제1호(통권 제86호), 2003년 봄, 90면.

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基幹通信事業者), 별정통신사업자(別定通信事業者), 부가통신사업자(附加通信事業者)가 포함된다. 여기서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⁴⁾

즉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인 전화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통신회선설비임대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 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중에서 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도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

업자 내지 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 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PC통신 즉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메가패스,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정보 제공형태와 관련하여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인터넷콘텐츠호스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4) 이상직, 「전기통신사업법론」, 진한도서, 1998, 115면.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되어있어
규제 장치들 간의 조화가 요구돼

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

위에서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콘텐츠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 바로 불법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이다. 이 제도의 헌법적·법체계적·법정책적 문제⁵⁾를 떠나서, 이 제도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언론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상의 일정한 정보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 및 그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당해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없으나 신청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한도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⁶⁾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5) 자세한 것은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60-77면 참조.

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관한 설명으로는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414-417면 참조.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게재청구제도⁷⁾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법체계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상호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신문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의해 법제화됨으로써, 인터넷신문은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장치들과의 조화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⁸⁾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결합되게 되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Ⅲ.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

1.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

(1)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결국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동일하다.

한편 신문법의 전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2004. 10. 20.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발의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하 ‘정청래 의원안’이라 한다)⁹⁾에서는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안에서의 인터넷언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다(정청래 의원안 제2조 제5호).

또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004. 10. 21.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천영세 의원안’이라 한다)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

7)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게재청구제도가 기존의 반론권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충적으로나마 반론권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제23권 제2호(통권 제87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6, 30면.

8) 물론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를 찬성한 견해가 합리적이긴 하다. 예컨대 김재영, “집중점검 인터넷언론: 위상강화 위한 법제화 필요-정간법 제2조에 근거규정을”, 「신문과 방송」 통권 제386호, 2003.2, 146-149면 참조. 하지만 법제화과정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이 문제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9) 이 개정안은 기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정청래 의원안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청원의 형태로 김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04 년도에 한국사회를 뜨겁게 했던 언론개혁입법, 특히 신문시장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정청래 의원안에 여야합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2004. 12. 31. 우상호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고, 2005. 1. 1.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의 신문법이 제정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매개하는 경우를 포함해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돼

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로 정의되고 있었다(천영세 의원안 제2조 제9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2.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정의를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¹⁰⁾

인터넷신문이라는 용어가 ‘인터넷’과 ‘신문’이라는 용어의 합성어라고 한다면, 인터넷신문에 대비되는 개념은 바로 인터넷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은 인터넷과 방송이 합성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 음향정보를 방송적인 형태로(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에 의해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되 이를 파일전송(File Download)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에 의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¹¹⁾

이러한 개념정의를 따르면, 사실 기존의 언론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그런데 방송(broadcasting)이라는 용어가 갖는 전통적인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방송은 수신자와 송신자가 상호작용을 통한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으로 통칭되는 인터넷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10)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를 대해서는 인터넷언론을 온라인 언론이 지니는 특징으로서보다는 여전히 오프라인 언론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 이 견해는 인터넷언론을 그 온라인성에 입각하여 정의내리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등과 구별되는 인터넷언론의 범주가 불명확하게 과잉 포섭되거나 또는 과소 포섭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근, “인터넷언론과 선거”,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3. 10, 136-137면 참조.
 11) 인터넷방송의 현황에 대한 소개로는 황상재, “인터넷 신문·방송 현황”, 「관훈저널」 통권 제73호, 관훈클럽, 1999.12, 165-176면 참조.

서 인터넷방송이라는 용어보다는 Narrowcasting, Internetcasting, Pointcasting, Streaming Media, Webcas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¹²⁾

이상과 같은 인터넷방송의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적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유사한 개념정의는 존재한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로 인터넷방송의 한 형태가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방송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적 정의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인터넷방송의 특성 중의 하나를 적시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법 제32조 제1항은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것으로서 소위 인터넷방송에 대한 내용규제권한을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다. 한편 방송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방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결국 방송법이 인터넷방송을 직접적으로 개념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법상의 규정내용을 살펴볼 때, 방송법에서 전제하는 인터넷방송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이 전제하는 인터넷방송은 그것을 제공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개념과 범위가 설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념정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할권의 분쟁의 타협물로서, 심의기구 중심으로 개념정의 및 규율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다. 즉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은 법제화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방송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정리

이상에서는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에 관한 개념정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 관한 개념정

12) 인터넷방송과 웹캐스팅을 분리하여, 인터넷방송은 스트리밍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웹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리는 반면에, 웹캐스팅은 전문화된 스트리밍을 비롯하여 푸쉬(push)나 온 디맨드(on-demand)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포괄적인 인터넷 웹서비스라고 정의내리는 견해도 있다. 최영, 『인터넷방송 : 웹캐스팅의 실제와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1999), 22면.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상의 인터넷방송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개념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개념정의들간의 공통점

위에서 도표로 정리한 각 개념들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안 내지 법령들이 비록 인터넷(정청래 의원안), 정보통신망(천영세 의원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신문법),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컴퓨터(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회선(방송법)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수단을 이용해서 기사나 정보 등을 보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각 개념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간의 개념정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관련 법률	정청래 의원안상의 인터넷언론	천영세 의원안상의 인터넷신문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방송	방송법상의 인터넷방송
근거규정	제2조 제5호	제2조 제9호	제2조 제5호	제8조의 5	제43조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개념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인터넷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일반적 정보와의 차별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발행 내지 간행의 '정기성' 혹은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개념정의들 간의 차이점

각 개념들 간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안상의 인터넷언론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의 개념정의에서 '기사를 매개' 하는 경우까지도 개념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개하는 경우까지 그 개념범위를 확대하는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의 공표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구제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언론의 고유기능이 여론형성에 있음을 고려하면 취재·편집·집필이 없는 인터넷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언론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¹³⁾

4. 개념정의의 문제점

이상에서 우리가 각종 법률 내지 법률안상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이 일반적인 인터넷콘텐츠와 어떻게 차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지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바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법제

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지원 및 규제 '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신문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집행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확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의 포괄성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적용범위의 포괄성이다. 물론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은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 '발행의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일반적 정보와의 차별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소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포괄성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이

13) 문화관광위원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홍의원 소개) 검토보고서」 2004. 11. 35면.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콘텐츠나 정보와 차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

상정하고 있는 ‘목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행의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 등과 같은 ‘행위요건’도 해석에 따라서는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들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대해서도 등록,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¹⁴⁾ 더욱이 신문법 제40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범위의 포괄성 문제와 결합하여, 소위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이 ‘매개’의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에서 더욱더 발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매개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매개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사이트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에 포섭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신문법상의 규제가 그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이 매개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문법이 정청래의원안이나 공직

선거법과는 달리 매개하는 경우를 배제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¹⁵⁾

(2)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

두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이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개념정의하면서 인터넷신문의 해당기준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예컨대 “...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 자체가 적용범위의 포괄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중요한 사항의 규율을 행정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문제 즉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의 문제도 노정시키게 된다.

IV.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

위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에 있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하였다. 지금부터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4) 신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각종 법안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상헌, “인터넷언론 입법: 필요성 인정하나 매체특성 반영 못해”, 『신문과 방송』 통권 제407호, 한국언론재단, 2004.11, 162면.

15) 물론 요즘 대형 포털사이트도 자체적인 기사제작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포털사이트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에 포섭될 여지는 있다.

즉 인터넷신문과 여타의 오프라인 언론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작업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 ‘오프라인 언론’은 언론중재법이 개념정의 내리고 있는 ‘언론’ 중에서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을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언론이라는 개념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의미한다.

1. 신문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 및 특징

먼저 제1장 총칙 중에서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연수 등)는 인터넷신문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는 적용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상의 모든 언론중재제도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언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신문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규정도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규정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부분 중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는 적용되지만,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제11조(광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적 선언 규정만 적용되고, 구체적인 독자의 권익보호장치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등에 관한 부분 중, 제12조(등록),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9조(필요적 게재사항), 제21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2조(직권등록취소), 제2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4조(정기간행물 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5조(청문)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제14조(외국자금의 출연 등), 제15조(겸영금지),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제18조(편집위원회 등), 제20조(납본), 제26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등록제도를 인터넷신문에 적용하는 한,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등록제도의 적용의 일환으로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라고 할 것이지만, 기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등 인터넷신문 이외의 오프라인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각종 시장규제장치들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제4장 신문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부분은 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3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으로 설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4호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중의 하나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4장 부분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은 그 내용 및 성격상 인터넷신문에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문법상의 각 조항들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정책과

언론중재법에서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채택하는 것은 정당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관련된 제도들은 적용하고 있지만, 규제정책과 관련된 제도들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 및 특징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언론옴부즈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고충처리인)만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지, 기타 언론중재법상의 모든 언론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언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 리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비록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상의 취급방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취급방법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응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즉 신문법은 거대 중앙일간지로 대표되는 신문 '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언론중재법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신문과 기타 오프라인 언론과의 차이점의 반영이다.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과 기타 오프라인 언론, 특히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신문법상의 차별적 규제내용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방법에 있어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은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장치라는 점이다. 즉 인터넷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이 기타 오프라인 언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는 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인터넷언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특성인 복제성, 파급성, 영향력 등으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언론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에 의한 것이든 혹은 오프라인 언론에 의한 것이든, 일정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권익구제장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그 외형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상의 개념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에 있기 때문에,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언론중재법에서 채택하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전과정이라든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중,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의 규제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러한 권익침해구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침해된 권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전파되는 의사표현이나 정보에 의해 개인의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의 설계 및 운영의 문제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인터넷신문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게 된다.

V.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실효성 확보

1.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정당성문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언론을 통한 피해발생시 피해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일단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 유통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을 받을 뿐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간편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기존 법률상의 문제점 내지 법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일반적으로 반론권으로 대표되는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의의는 언론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동시에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언론보장을 더욱 더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의의를 이렇게 인정하는 한, 언론의 발현형태가 오프라인 매체인든 혹은 온라인매체인든 차별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16) 특히 인터넷신문이 다른 오프라인 언론과 비교해 볼 때 갖는 절대적인 장점은 속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보성이 오히려 부정확한 뉴스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구제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언론이 갖는 속보성과 이로 인한 저널리즘의 문제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재영, "인터넷언론의 오보, 명예훼손과 표현자유의 경계", 「계간 언론개혁」 통권 제4호, 21세기언론연구소, 2001년 겨울, 185-187면 참조.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될 정정보도 등의
특수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특히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결합된 단지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다른 형태의 발간'으로 보는 경우¹⁷⁾에는, 더욱 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을 거부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반론권이 일방적 정보전달매체인 매스미디어에 있어서의 정보수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그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등이 그 특징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반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거나,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식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변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¹⁸⁾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적절성 문제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인터넷언론의 특성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실효성 확보문제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인터넷신문에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방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6항은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방법의 원칙’이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인터넷매체의 경우에 동일한 방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혹은 피해자의 권익구제의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타 오프라인 언론에서만만큼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될 정정보도 등의 특수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⁹⁾

그리고 언론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나 조직과 관련하여,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되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된 이상,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조정신청이나 중재신청에 대비하여 중재위원의 상근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⁰⁾

17) 예컨대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453면.

18) 예컨대 강경근, “인터넷 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제23권 제2호(통권 제87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6, 16면.

19) 예컨대 인터넷신문에서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항상 초기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등장하는 팝업창의 형태로 게재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466면.

Ⅵ.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의 문제 및 법체계상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혁명의 산물인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논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 및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이라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긴장관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사회

에서의 필요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극대화시키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와 개인의 인격권 등 권익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라는 또 다른 가치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들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신문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언론의 기능과 그 법적·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바로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적 타협물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